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

2020. 2.

국 토 교 통 부

1. 개정이유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(법률 제16382호, 2019.4.23. 공포, 2020.04.24. 시행)에 따라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, 교육내용,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교육의 방법 등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‘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’으로 명확하게 규정(안 제3조 개정)
- 나. ‘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’과 관련하여, 교육시간, 교육내용을 규정(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)
- 다. ‘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’과 관련하여, 교육방법, 교육기관을 규정(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교육의 방법 등)”을 “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)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) ①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종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연1회,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2.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
3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
4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종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
3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육의 방법 등)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2(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)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종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연1회,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
2.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

3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

4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
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종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

3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